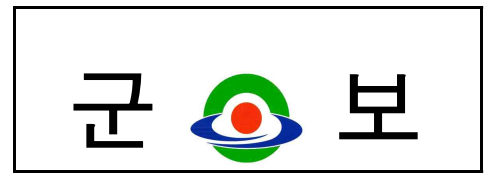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91호 2022. 9. 19.(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41호)

고 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91호)

공 고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176호)

예 규

-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예천군 예규 제2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9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41호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 편의 제공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징수대상 삭제(안 제4조제1항제4호)

- 보건소장이 공익상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삭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개포	가곡	127	14,000	2022.09.14. ~ 2023.08.31.	198,900	남 도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실시하여 예천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 재정난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규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답례품비 지급 및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 사용목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bc0523@korea.kr

2)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 054-650-61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

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농업·유통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은 이 조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예천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예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예천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예천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별표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자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공무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및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4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

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사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1.농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기반(농지, 축사 등)을 갖추고 있는 있는지를 확인(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등)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경영주)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 확인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되는지 확인 (4점) - 생산자가 관할구역 안에서 답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 (5점)
2.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20점)	○ 공급업체의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으로 평가 (10점) ○ 생산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생산,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 (10점)
3.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성(30점)	○ 농산물의 지명도, 인지도, 전통성 등의 요소를 토대로 지역대표 지역특산품인지를 평가한다. (30점)
4. 마케팅 및 유통관 리(25점)	○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입점·판매 등 (10점) ○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4점) ○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점)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점)

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	○ 해당 제품 생산 시설 장비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4점)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측정자료(전문기관 발행자료) - 당도, 성분, 기능성 등 (2점)
	○ 잔류농약검사, HACCP 등 제품의 안전 확보의 적절성 (4점)
6. 가점(5점)	○ 국가(친환경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GAP농산물, 저탄소인증 등)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인증, 지자체 공동브랜드 사용 (2점) ○ 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 (3점)

2. 농수산 가공식품(제조업)

참고 1 관계법령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사업목적 부합성(10점)	○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 여부 (2점) -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제조 시설기반 보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대표자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가족관계등록부) (2점) - 답례품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해당 여부 (3점)
2. 사업체의 운영 역량(15점)	○ 사업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교육 참가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회계, 경영,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2점) ○ 답례품의 연중 및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6점) ○ 제조업체일 경우 최근 3년간의 경영 및 재무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 (7점)
3. 지역자원과의 연계성(30점)	○ 답례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사용(규모, 비율과 조달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업체가 답례품 생산을 위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원물) 사용에 대해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 사항
	a	30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100퍼센트 이상을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b	20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c	15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d	5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 이상이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	○ 공장입지에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공장입지에 오염원 유·무 및 관리 정도를 평가 (5점)		
	○ 답레품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작업장의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 분리 유·무 및 교차오염 방지 관리 정도를 평가 (3점)		
	○ 답레품 제조·가공을 위한 적정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품 생산 기계설비, 식품소재 반가공 시설·장비 등 (7점)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	○ 답레품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 등이 수립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4점)		
	○ 답레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품질검사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5점)
	○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장구(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착용 및 오·폐수의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위생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평가 (3점) - 적정규모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 및 배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3점)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	○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입점·판매 등 (7점)
	○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3점)
	○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지를 평가 (3점)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점)
7. 가점(5점)	○ 국가(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인증, 전통주인증, 지리적표시, GAP, HACCP 등)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3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제품업체간 공동협력 -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도 등 (2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다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

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9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4호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 보상금은 지급신청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수집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캔류, 플라스틱류 : 10원/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보상금 지급은 각 건별로 보상금신청단체대표 명의로 된 예금통장으로 예입하고,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수집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예천사랑상품권, 가용포인트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운영계획과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주요내용

- 클린예천 보물마차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수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